

# 산업안전보건, 전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전환 필요

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

##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해 최선 산안법,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호하도록 개정 추진

취재 정태영 기자 anjty@safety.or.kr

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노동 전문가로 꼽힌다. 이는 그의 지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. 신 위원장은 1980년대부터 10여 년간 산업현장을 직접 누비며 노동·인권 운동에 앞장서 왔다. 이후 그는 1992년 14대 국회에서 입성한 후 환경노동위원회에 몸을 담으면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. 또 16대 국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갔다. 당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재임시절에 노동계와 재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주5일 근무제를 도입시킨 것이 대표적이 예라고 할 수 있다.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는 그동안의 환경노동 관련 경험을 인정받아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. 이처럼 그는 환경노동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. 그만큼 신 위원장의 의정활동에는 많은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다. 이에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나라 산업안전문화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다.

### Q.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대해 남다른 신념과 철학을 지니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 철저히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입니다. 근로자는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. 때문에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는 여러 안전기술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발을 헛디디는 걸 예상하고 난간을 설치한다든가, 건강이 위독해질 것을 예상해 인체에 덜 해로운 재료를 쓰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.

하지만 우리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 전 산업현장에서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체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근로자가 관리자 눈치를 보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.

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권리를 인정하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문제가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 전환이

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### Q. 환노위를 아끌어 갑에 있어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중점 현안으로는 '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소'를 들 수 있습니다.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노동계 내에서의 약자층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고, 불공평한 근로조건이 확대되는 등 현 노동환경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저 역시 이번 국회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반드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

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편법적인 운영 사례는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. 또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요.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와 노동계 양측 모두 편견 없이 만날 것입니다.

더불어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저를 비롯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, 재계와 노동계 양측을 잘 존중하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결론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*Q.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가 유독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만 발전이 더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**

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,436만 2,372명 가운데 9만 3,292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. 이 가운데 2,114명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.

근로자 1만 명당 사고로 사망한 비율은 0.96명으로 경제 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.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국(0.35명)의 2.7배, 일본(0.20명)의 4.8배, 독일(0.16명)의 6배에 이릅니다.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.

저는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먼저 원청이 사내하청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산재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. 또 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 역시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80년대 굴뚝산업을 기반으로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서비스업종의 증가, 하청 근로자의 증가 등 변화된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제도가 마련돼야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**Q. 산업재해의 입증 책임을 근로자와 사업주, 국가 중 누구에게 둘 것이나 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.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**

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의 입증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와 국가가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.

인권위는 현행 제도가 피해 근로자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성 및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인과관계의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것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

반면 재계는 이와는 상반된 의견을 내보였습니다.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그 근거가 되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'입증책임의 일반원리'에 반하는 내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지요. 고용노동부 또한 인권위의 권고안이

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일단 산재로 전제한 뒤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사업주가 나서서 반증하라는 것이어서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

그러나 최근 사회현안이 된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산재보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이 부각돼야 합니다. 따라서 노사의 의견조율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본적인 입증책임 주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.

**Q. 장시간 근로문제 역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입니다. 이와 관련해 위원장님께서도 그간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향후의 추진 계획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.**

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가장 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.

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5명 중 1명꼴이며, 우리 근로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2,193시간에 달합니다.

장시간 노동관행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없다면 우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은 향후 더욱 나빠질 것입니다. 실로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가 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. 장시간 노동 체제는 경쟁력 향상에도 짐이 되는 만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

다만 비정규직을 포함한 저임금 근로자들의 경우 임업, 특근이 줄어들게 되면 곧바로 생계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해 저임금 계층의 실질 임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☺

